

電力技術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시행 안내

12월 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력기술관리법이 12월23일자로 공포되어 6월이 경과한 6월24부터 시행됩니다.(내용 전문은 협회홈페이지나 12월호 협회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운영요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지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대통령령 제19188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 12. 27일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기요금에 따라 산정되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_____ _____ 1천분의 37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5년 12월 28일 이후의 전기요금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p>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법률 제7741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005. 12. 23일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또는 전기공사업자의 경영상태 조사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고,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사전에 조사·검사의 사유·일시·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내

법률 제774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2005. 12. 23일 공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설비에 관한 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财源 조성을 위한 부담금의 납부의무자 중에서 구역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 양수발전을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자 등을 부담금 면제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